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 및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데이터정책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3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각각 삭제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29명(5급 13명, 6급 13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광개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

중앙박물관의 공업주사보 정원(7급 1명)을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정원 1명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의 명칭을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기획과의 명칭을 디지털소통콘텐츠과로 변경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혁신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데이터정책팀장”을 “기획혁신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지능정보화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을 “지능정보화담당관은”으로, “서기관으로, 데이터정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통계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통계에 관한 기획·조정·예산 및 관리 총괄
- 23.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24.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에 관한 대외 협력·지원

제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 1의2.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4의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

의 수립 및 지도·감독

-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 제8조의2제6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7호를 삭제한다.

13의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제10조제6항 중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지원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디지털소통기획과·정책포털과·뉴미디어소통지원과”를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지원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디지털소통콘텐츠과·정책포털과·뉴미디어소통지원과”로,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디지털소통기획과장·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을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총괄”을 “총괄 기획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정부 디지털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8.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 9. 디지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10.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제1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소통기획과장”을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전략 수립·시행
 2. 소셜 미디어 등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3. 정부 대표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제작 및 확산
 4.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관련 캠페인 기획 및 시행
 5. 디지털 소통 경향 및 우수사례 연구 및 활용
 6. 그 밖에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1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호 중 “기획·협의를”을 “기획·제작·확산 및 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지털소통콘텐츠 협력·지원”을 “디지털홍보 협의·조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범정부 주요 정책의 디지털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4.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5. 범정부 정책 홍보 관련 디지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그 밖에 범정부 정책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6조제1항 단서 중 “7명”을 “8명”으로, “1명”을 “2명”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48”을 “749”로 하고, 일반직 계 “741”을 “742”로 하

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01”을 “203”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94”를 “189”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을 “91”로 한다.
별표 3 중 공업주사보 “6”을 “5”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3의2 중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4”로 하고, 공업주사 “6”을 “5”로 하며, 공업주사보 “5”를 “4”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7명”을 “5명”으로, “4명”을 “2명”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을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7명”으로, “2024년 11월 30일”을 “2026년 11월 30일”로, “2024년 12월 1일”을 “2026년 12월 1일”로,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을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5명(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7명),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별표 3의2”를 “별표 3의2”로,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각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4]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조정실에 <u>기획혁신담당관</u> · <u>재정담당관</u> ·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u>정보화담당관</u> · <u>양성평등정책담당관</u> 및 <u>데이터정책팀</u> <u>각 1명을 두되</u> , <u>기획혁신담당관</u> 및 <u>정보화담당관</u>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재정담당관</u> 및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양성평등정책담당관</u> 은 <u>서기관</u> 으로, <u>데이터정책팀장</u> 은 서기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u>기획혁신담당관</u> · <u>재정담당관</u> ·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u>지능정보화담당관</u> · <u>양성평등정책담당관</u> ----- ----- <u>지능정보화담당관</u> 은 ----- ----- ----- ----- <u>서기관</u> ----- ----- -----.
⑥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u>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통계에 관한 기획·조정·예산 및 관리총괄</u>
<신 설>	23. <u>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u>

<신 설>

⑦·⑧ (생략)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생략)

<신 설>

2. ~ 4. (생략)

<신 설>

5. ~ 7. (생략)

<신 설>

<신 설>

⑩ (생략)

시행

24.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에 관한 대외 협력·지원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지능정보화담당관-----
-----.

1. (현행과 같음)

1의2.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5.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 (현행과 같음)

⑪ 삭 제

⑫ 데이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통계 · 공공데이터 · 빅데이터에 관한 기획, 예산 검토 · 조정 · 작성, 활용 기반 구축 및 관리 총괄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통계 · 공공데이터 · 빅데이터에 관한 품질 관리 총괄

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통계 및 수치자료가 활용된 연구결과물의 정확성 검토 등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통계 · 공공데이터 · 빅데이터에 관

<삭 제>

한 협력 ·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 · 공공데이터 ·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 설>

14. (생략)

⑦ (생략)

⑧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8. (생략)

⑨ ~ ⑫ (생략)

제10조(국민소통실) ① ~ ⑤ (생략)

⑥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 · 소통협력과 · 소통지원과 · 콘텐츠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1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민소통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소통정책과 · 소통협력과 · 소통지원과 · 콘텐츠

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디지털소통기획과·정책포털과·뉴미디어소통지원과를 두되, 소통정책과장·여론과장·소통협력과장·소통지원과장 및 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디지털소통기획과장·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⑫ (생략)

⑬ 디지털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소통정책 총괄 지원

2.·3. (생략)

4.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5.·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디지털소통콘텐츠과·정책포털과·뉴미디어소통지원과-----

분석과장·디지털소통정책과장·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

1. ----- 총괄 기획 및 -----

2.·3. (현행과 같음)

<삭제>

5.·6. (현행과 같음)

7. 정부 디지털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8.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9. 디지털정책홍보 평가시스템

<신설>

⑭ 디지털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신설>

<신설>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6.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7. 정책홍보 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⑮ (생략)

⑯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의 운영

10.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⑭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

1.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전략 수립·시행

2. 소셜 미디어 등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3. 정부 대표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제작 및 확산

4.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관련 캠페인 기획 및 시행

5. 디지털 소통 경향 및 우수사례 연구 및 활용

6. 그 밖에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에 관한 사항

<삭제>

⑮ (현행과 같음)

-----.

1. 범정부 주요 정책 디지털소통콘텐츠 <u>기획·협의</u> 2. 각 중앙행정기관의 <u>디지털소통콘텐츠 협력·지원</u> 3.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강화 4. 영상·그래픽 등 디지털소통콘텐츠 <u>기획·제작</u> 5.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협력 6.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u>7명</u>(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u>1명</u>)	1. ----- ----- <u>기획·제작·확산 및 협의</u> 2. ----- <u>디지털홍보 협의·조정 및 지원</u> 3. 범정부 주요 정책의 디지털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4.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5. 범정부 정책 홍보 관련 디지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그 밖에 범정부 정책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사항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u>8명</u>----- ----- <u>2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정책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데이터정책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데이터정책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보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	---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 주사 4명)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1의2의 행정주사 3명, 행정 주사보 4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5명----- --- 2명----- ----- ----- ----- ----- -----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6명(행정사 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 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 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 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 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별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정원 15명-----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 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 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 사 또는 학예연구사 7명-----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 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 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 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 사무관 1명)은 2024년 11월 30 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사서주 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 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 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 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8명,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 명, 별표 5의2의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 ----- ----- ----- ----- ----- ----- ----- ----- 2026년 11월 30 일 ----- 2026년 12월 1일-----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 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7명----- ----- ----- ----- ----- ----- -----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u>2024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 ----- ----- <u>2026년 6월 30일</u>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 ----- <u>2026년 12월 31일</u>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u>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u>별표 3의2</u> -----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u>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u> 본다.	----- ----- ----- ----- ----- ----- ----- <u>각각</u> ----- ----- ----- -----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48	749	+1
일반직 계	741	742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 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201	203	+2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 ·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94	189	-5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	91	+4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u>6</u>	<u>5</u>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4</u>	<u>5</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u>	<u>4</u>	+1
•	•	•	
•	•	•	
공업주사	<u>6</u>	<u>5</u>	-1
•	•	•	
•	•	•	
공업주사보	<u>5</u>	<u>4</u>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4</u>	<u>5</u>	+1
•	•	•	
•	•	•	